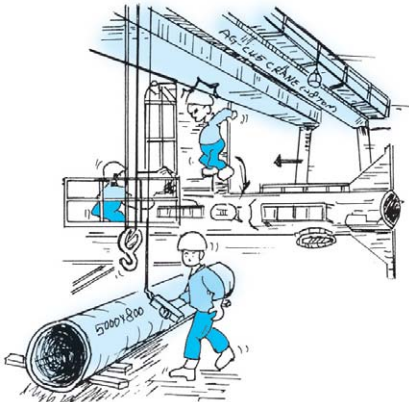


1. 재해발생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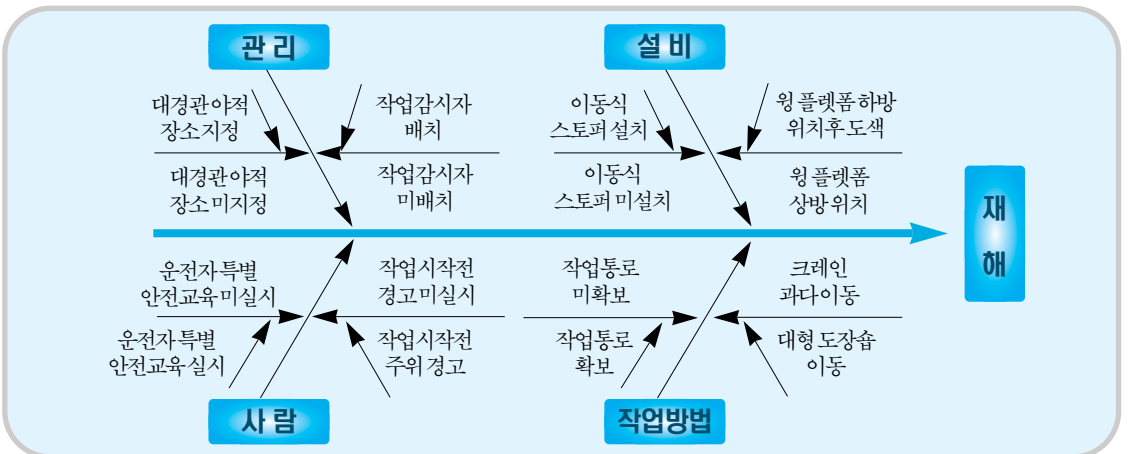
2003년 8월 ○일 11:00분경 울산시 소재 ○○조선소 셀타장내에서 천정크레인을 이용하여 마스트용 대경관을 운반하기 위해 이동 중 마스트 플랫폼 하부 붓도장 작업중인 피재자가 플랫폼과 이동중인 크레인 거더 사이에 협착 후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원인

- 가. 크레인 주행방지조치 미실시
- 나. 크레인 운전 부적정
- 다. 관리감독 미흡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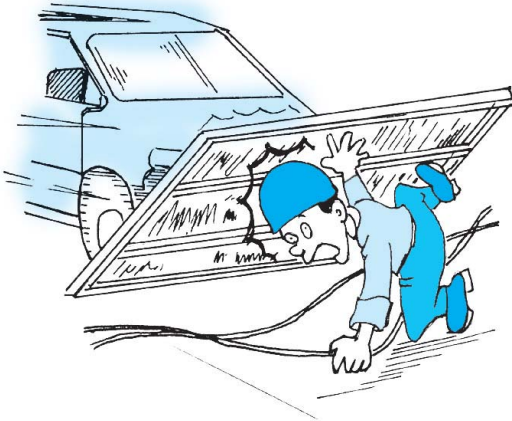
- 가. 크레인 주행방지조치 실시
 - 부재 등에 간섭되어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 부재로부터 상당한 위치의 주행레일 상부에 이동식 스톱퍼를 설치하여 크레인 주행을 방지하여야 함.
- 나. 크레인 운전자 특별안전교육 실시
 - 정기적인 특별안전교육 및 사내 크레인 운전자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조치
- 다. 원천적 재해예방 대책수립
 - 부재의 높이가 크레인 거더보다 높을 경우 원천적 안전 확보를 위해 별도의 대형 도장습으로 이동토록 조치하거나, 윙 플랫폼을 바닥으로 두어 크레인과의 간섭을 예방하는 등 적극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토록 함.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1. 재해발생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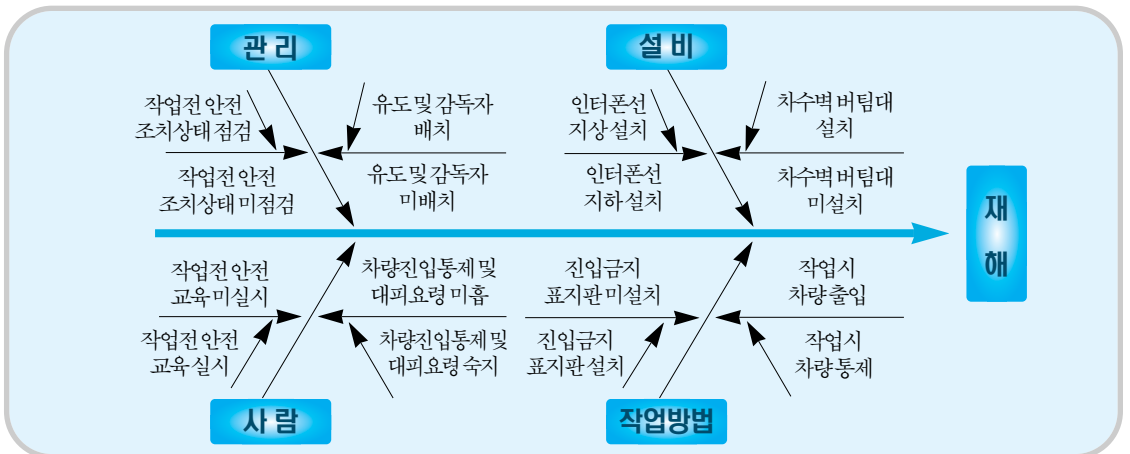
2003년 8월○일 12:40분경 서울시 종로구 소재 ○ 빌딩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인터폰선을 점검 하던 중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차량이 차수벽을 올라 타면서 밑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 임.



2. 재해발생요인

- 가.진입금지 표지판 미설치
- 나.차수벽 버팀대 미설치
- 다.인터폰선 설치 위치 불량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 가.진입금지 표지판 설치
차수벽 수리, 점검시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진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유도자를 배치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함.
- 나.차수벽 버팀대 설치
차수벽을 들어올린 상태에서는 제일 먼저 버팀대를 중앙에 고정하여야함.
- 다.인터폰선 설치위치 변경
인터폰선을 지상으로 변경하여 설치하여야함.
- 라.작업시 차량 통제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작업시에는 차량을 통제함으로써 차량으로 인한 안전을 확보해야함.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1. 재해발생 경위

2003년 8월 ○일 12:30분경 서울시 종로구 소재 (주) ○○ 자원 작업장에서 재해자가 점심식사 후 세면장에 손을 씻으러 갔다가 하수구가 막혀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배수를 위해 집수정에서 고장난 양수기를 꺼내 수리하던 중 누전된 고장난 양수기 외함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가. 고장수리시 정전작업 미실시
- 나. 누전차단기 고장
- 다. 절연장갑 미착용

3. 재해 요인도

4. 동증재해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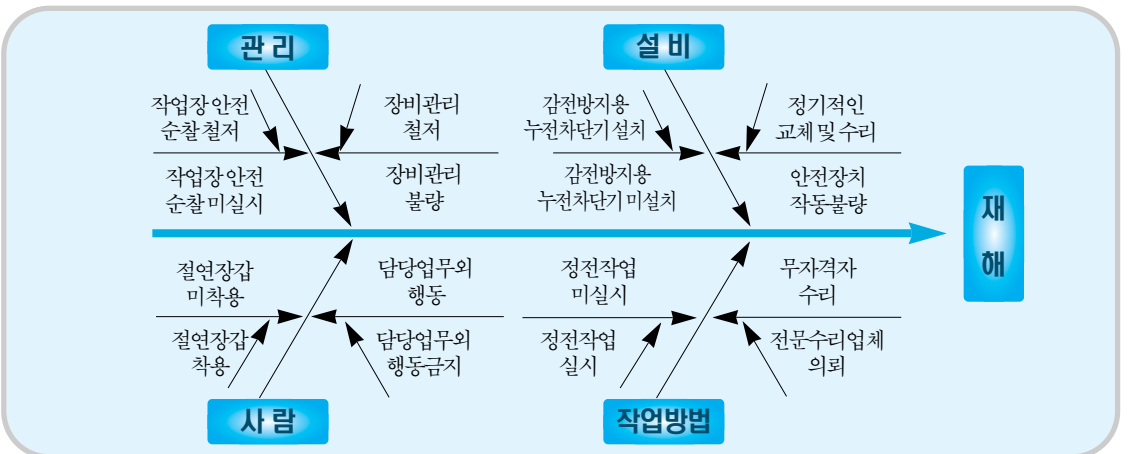
가. 고장수리시 정전작업 실시
양수기 수리, 점검시 해당전로의 개폐기를 차단하고 통전금지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의 정전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양수기 취급장소는 물로 인해 인체의 저항이 급격히 저하될 우려가 높으므로 전원측에는 반드시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함.

다. 전문수리업체에 의뢰
양수기 고장수리시 누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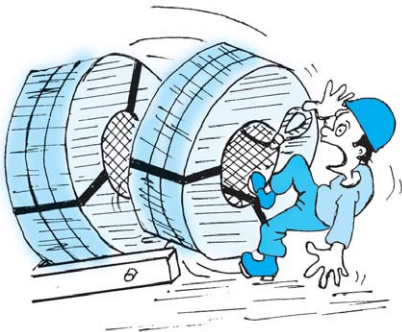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1. 재해발생 경위

2003년 7월 ○일 11:30분경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산업(주)프레스작업장에서 블랭킹 작업을 하기 위해 받침고임목 위에 적재되어 있는 묶음코일을 분리하기 위해 절단가위로 밴딩을 절단하는 순간 받침고임목에 불안정하게 적재되어 있던 코일이 재해자쪽으로 전도되면서 협착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작업자세 부적절
- 나.적재방법 불량
- 다.작업시작전 안전점검 미 실시

3. 재해 요인도

4. 동증재해예방대책

가.작업자세 개선

밴딩으로 묶여 있는 코일 절단작업시 평탄한 지면에서 하고, 작업위치는 측면에서 서서 밴딩을 절단하여야 함.

나.적재방법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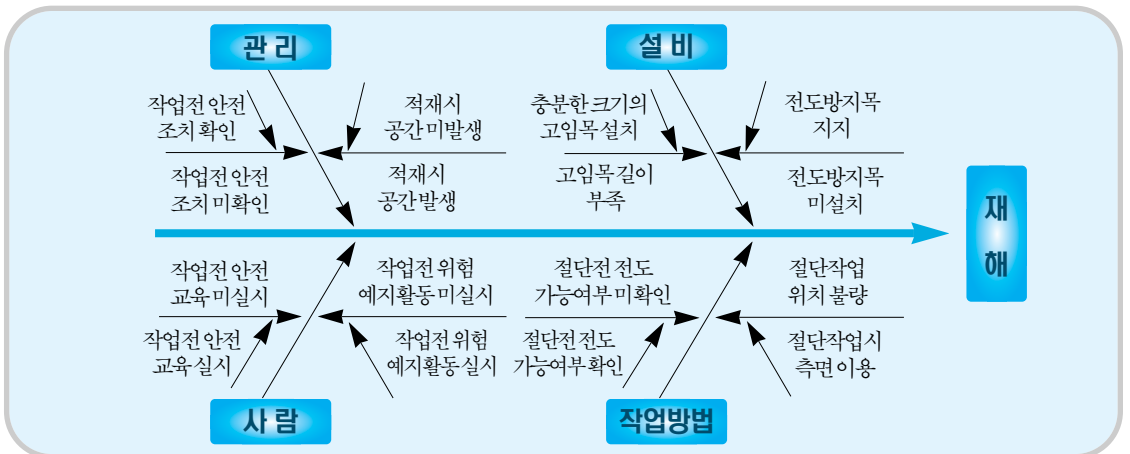
묶음코일 등을 날개로 분리할 때에는 코일이 구르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충분한 크기의 고임목을 사용하여 전도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다.작업시작전 위험예지훈련 철저

묶음코일을 받치고 있는 고임목의 상태 등 안전성을 점검하고, 작업시 위험사항 숙지를 위한 위험예지훈련의 습관화가 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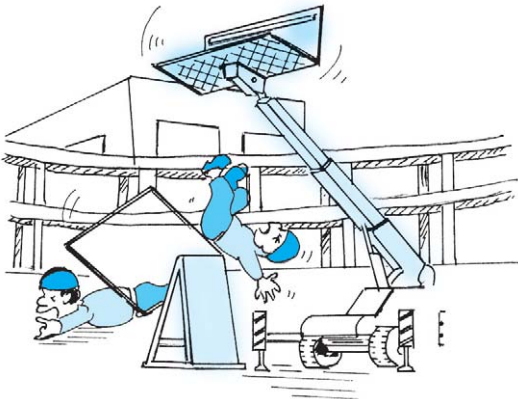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1. 재해발생 경위

2003년 8월 ○일 11:30분경 경기도 고양시 (주)○○ 건설 현장에서 고소작업차 탑승함에 5명이 탑승하여 북층유리 3매를 운반하던 중 작업차량이 요동하여 1명이 추락하여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작업방법 불량
- 나.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다. 허용적재하중초과 근로자 탑승

3. 재해 요인도

4. 동증재해예방대책

가. 작업방법 개선

고소작업차사용시 탑승함에는 장비제원에 따른 허용적재하중 이내의 근로자 탑승 또는 자재를 적재하고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나. 추락방지조치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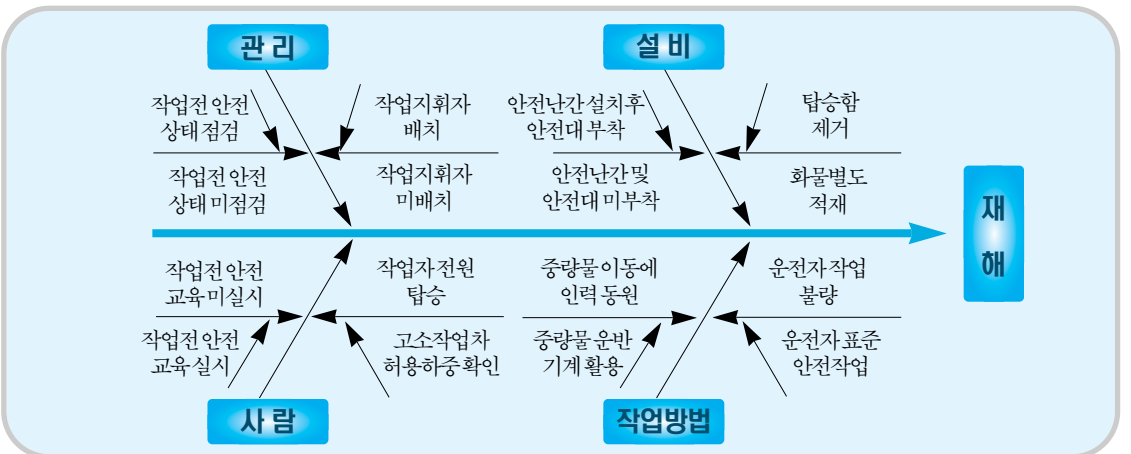
고소작업차사용 작업시 탑승함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때에는 반드시 탑승함 사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 상태에서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다. 고소 운반작업시 운반기계 활용

고소에서 중량물 운반을 위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중심을 잃어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용 운반기계를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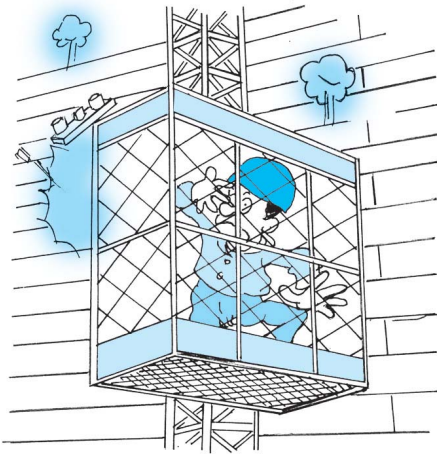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1. 재해발생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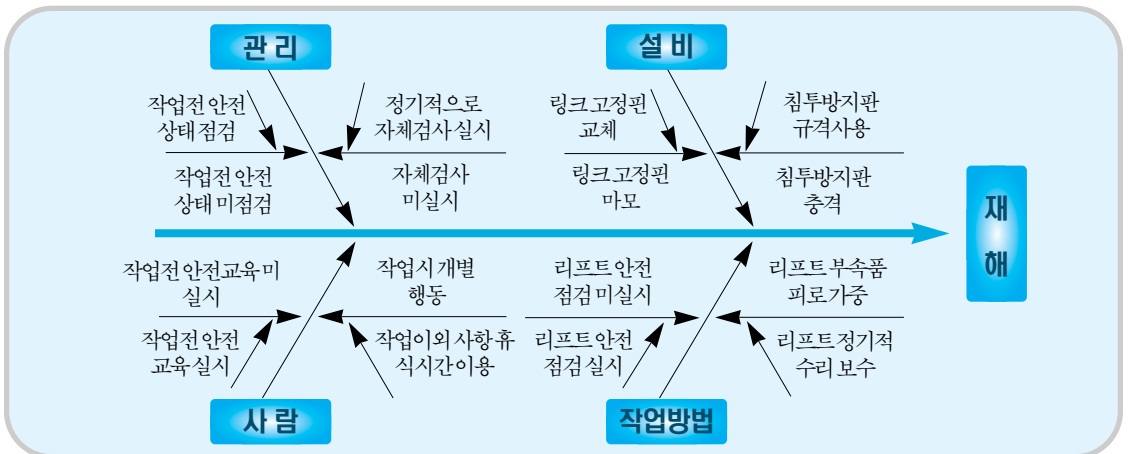
2003년 7월 ○일 07:50분경 대구시 달성구 ○○건설(주)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가 마스트에서 이탈, 운반구가 지상까지 낙하하여 탑승하고있던 피재자가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고정용 핀의 주기적인 자체검사 미실시
- 나. 마모 변형시 교체 및 유지관리 활동 미흡

3. 재해 요인도



4.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사전점검철저
- 링크고정용 핀의 변형, 마모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장기 사용품은 피로 하중을 고려하여 신 품으로 교체

- 피니언과 랙기어 사이 이물질 침투방지판의 규격 과 부착방법, 부착위치 및 간섭이 발생하더라도 충 격을 무시할수있는 강도의 규격 사용 검토

나. 자체검사 실시

유해 · 위험 기계기구에 대해 자체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함.

5.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이하의 벌금